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서울아리수본부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서울아리수본부

총 1건 건의

목 록

연 번	건의제목	건의부서
1	한강수계법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생산관리과

법령 · 제도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1. 한강수계법 수계관리 기금의 용도 확대 (생산관리과, '24. 4. 30.)</p>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등 총 4개의 법률로 구성 ※ (유사성) '09년 4개 법률 → 단일 법률 일원화 추진 ○ 지난 '24. 2. 13. 한강수계법을 제외한 3개 수계법(시행령)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추가 ※ (추가)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등 ○ 한강수계 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불가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공급을 위한 취수·정수 시설 유지보수 예산 증가 추세 ○ 생산재료비(전기요금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취수·정수 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어려움 <p><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 수도사업자도 3개 수계 수도사업자와 같이 취수·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현 행</th> <th style="width: 50%;">개 정 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28조(기금의 용도) 1. ~ 14. (생 략) 〈신 설〉</td> <td style="padding: 5px;">제28조(기금의 용도) 1. ~ 14. (현행과 같음) 15. 「수도법」 제3조제 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td> </tr> <tr> <td style="padding: 5px;">15. (생 략)</td> <td style="padding: 5px;">16.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기금의 용도) 1. ~ 14. (생 략) 〈신 설〉	제28조(기금의 용도) 1. ~ 14. (현행과 같음) 15. 「수도법」 제3조제 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5. (생 략)	16. (현행과 같음)	<p>(환경부)</p>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기금의 용도) 1. ~ 14. (생 략) 〈신 설〉	제28조(기금의 용도) 1. ~ 14. (현행과 같음) 15. 「수도법」 제3조제 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5. (생 략)	16. (현행과 같음)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한강수계법(제22조)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한강수계법 시행령(제28조)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 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원수 중 지오스민(Geosmin)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다. 원수 중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 낙동강수계법(제35조)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2016. 1. 27.>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제36조)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3의2.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 가. 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 나. 원수에 대하여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 다. 원수 중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월평균 농도와 과불화옥탄산(PFOA)의 월평균 농도의 합계가 리터당 0.07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 라. 원수 중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0.48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 마. 원수의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3.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4.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5.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 금강수계법(제33조)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금강수계법 시행령(제35조)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4.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7. 비점오염저감사업
8.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9.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1.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2.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3.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4.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 영산강섬진강수계법(제33조)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제35조)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퇴적물준설사업
4.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운영
5. 비점오염저감사업
6.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7.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9.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0. 환경기초조사사업
11.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2.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4.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5.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6.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7.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

- 환경부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는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이라 한다)을 입법예고(7.15일자)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국민, 기업의 법 수요자의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제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4개의 법률을 통합·정비하는 것이다.
 - 그 동안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이 각각 운영됨에 따라 국민, 기업 등 법 수요자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화('09.5,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가 추진됨에 따라 4대강수계 개별법의 통합·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 ※ '98년도부터 추진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은 '99년 한강수계법 제정을 시작으로 '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유사한 체계를 가진 4개의 개별 법률로 출발함

◆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정비하였다.

-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통합·정비함

한강수계법(제8장 45조문)
금강수계법(제9장 44조문)
낙동강수계법(제9장 47조문)
영산강·섬진강수계법(제9장 44조문)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53조문)

□ 둘째, 낙동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는 독자적인 장(章)을 신설하여 현행 틀을 유지하였다.

- 다른 3대강 수계법에는 없는 “개발사업시 녹지조성의무,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시설 설치, 폐수재이용, 취수시설의 설치시 수질영향조사” 등의 제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낙동강수계만 적용되도록 함

□ 셋째,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 조정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였다.

- 숙박업, 공동주택 등 종전의 행위제한 시설과 형평성 제고와 수질 개선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고, 종전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 협약체계 및 지원 내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 마지막으로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수부터 수변생태벨트 조성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토지매수와 생태복원 등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구(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4대강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임의적·산발적 토지매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가의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수변구역 내 오염원 증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수변구역 내 난립된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되, 수변구역 지정은 유지하도록 함

※ 수변구역 : '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에 수변구역을 지정(전 국토의 약 1%, 총 1,200km²), 공장, 음식점, 축사 등의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고, 동시에 토지매수·생태벨트 조성 추진[지정범위→하천경계 양안 300~1km 이내의 지역(수계별 상이)]

□ 이번 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그 동안 4개법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4대강 수계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